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53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5월 21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5월 24일(월)

2. 제출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등록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안 제2조)
-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안 제3조)
-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안 제4조)
- 마.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안 제5조)

4. 관계법령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원 대상에 “골목형상점가”¹⁾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음.
- 먼저 동 조례안은 제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상위법에서 “골목형상점가”는 소정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 곳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조례의 주요 내용 또한 지정과 신청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제명에 ‘지정’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힌 목적 조항이며, **안 제2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 **안 제3조**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조례 제목에 상응하도록 조 제목을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같은 조 제1항**은 동 사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의 요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만, 현 조례안에는 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하고, 제1항 조문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2021. 5. 26.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내 표준 신청서 참조). 또한, 같은 조 제4항 역시 골목형상점가 확인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동 항 조문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내 지정(변경)서 참조).

1)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수정내용은 [붙임 1] 제정안과 수정안 비교표 참고

-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시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절차로 보임.

붙임 1. 제정안과 수정안 비교표

2. 별지 제1호서식
3. 별지 제2호서식

<붙임 1>

제정안과 수정안 비교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p> <p>1. ~ 6.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확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 ----- . ----- ----- ----- ----- ----- .</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붙임 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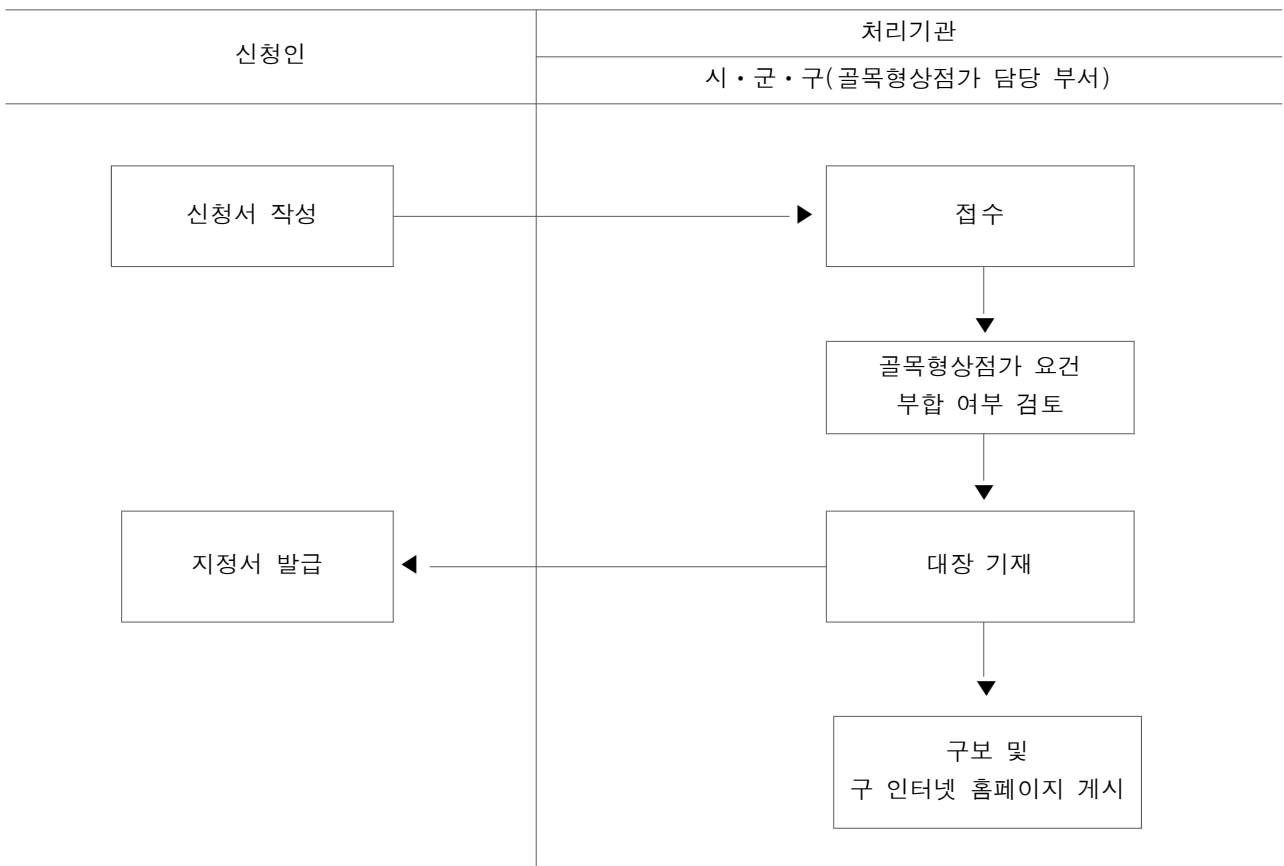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3>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